

보 고 사 항

□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사항

○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8. 4 . 14

(화순군의회 공고 1998 - 2 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'98. 4 . 16 (木) 11:00

- 장 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

'98. 3. 14 인사발령

○ 배 동 기 부군수 → 구례군 전출

○ 민 병 갑 목포시 전입 → 부군수

'98. 4. 1 인사발령

○ 서 대 식 위생환경사업소장 → 보건소 예방의약계장

○ 최 가 남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→ 위생환경사업소장

□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

○ '98년도 상·하수도 사업투자부문 지방채 발행계획의 건 - 98. 2. 23 집행부
이 송

○ 이양,동북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(변경)안에 대한 개진의 건
- 98. 2. 23 집행부
이 송

○ 남면 도시계획(하수 처리장)시설 결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
- 98. 2. 23 집행부
이 송

○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- 98. 2. 23 집행부
이 송

-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- 98. 2. 23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8. 3. 12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31 호

-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- 98. 2. 23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8. 3. 12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32 호

-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 - 98. 2. 23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8. 3. 12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33 호

-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- 98. 2. 23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8. 3. 12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34 호

-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- 98. 2. 23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8. 3. 12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35 호

-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- 98. 2. 23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8. 3. 12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36 호

□ 각종의안발의 및 제출현황

-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- '98. 4. 14 의원 발의
 - 발의자 : 박 병 옥 의원외 2 인
 - 회 기 : '98. 4. 16 ~ 4. 22 (7 일간)

- 제61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- '98. 4. 14 의원 발의
 - 발의자 : 박 병 옥 의원외 2 인
 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
-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8. 4. 10 군수 제출
 - 제안이유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화순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따라 민자유치사업 추진업무가 종전의 경영정책실 소관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소관을 달리 하게 되어 그 내용을 정비코자 함.
 - 주요골자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종전에는 경영정책실장이 맡도록되어 있던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본위원회 간사를 종전에는 경영수익계장이었던것을 업무담당 계장으로 개정
(안 제2조 제2항, 안제7조 제2항)
 - '98. 4. 10 총무위원회 회부

-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- '98. 4. 10 군수제출
 - 제안이유

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자구수정
 - 주요골자

간사장을 간사와 서기로하고 기획계장을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
(안 제6조)
 - '98. 4. 10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- '98. 4. 10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재난관리법 개정내용이 '98. 3. 1부터 발효됨에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.

○ 주요골자

- 기금의조성 (안 제2조)

-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-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- 기금의관리 (안 제4조)

-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에 재난관리 기금 계좌설치

- 기금의 회계관리 (안 제7조)

-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 준용.

○ '98. 4. 10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- '98. 4. 10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위생업소 증가와 보건위생에관한 관심제고로 업무량이 대폭증가하여 위생담당 공무원 보강이 필요하여 정원관리 부서별 인력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과 위생계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함.

○ 주요골자

- 안 제2조 화순군의 본청, 의회사무기구,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같이 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· 군 본 청 : 245 명 (+1) | · 의회사무기구 : 18 명 |
| · 직속기관 : 158 명 (-1) | · 사 업 소 : 25 명 |
| · 읍 · 면 : 315 명 (-1) | |

- 안 제3조중 본청 다음에 "의회사무기구" 를 삽입

○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'98. 4. 10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본 조례중 자동차세 감면요건등의 일부를 개선 보완 하기위함.

○ 주요골자

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중 제2항에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각호로 구체적으로 규정

-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차 ·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
-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· 이륜자동차

- 현행 제2항에서 각호로 규정하였던 "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"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4호 "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" 신설 하였습.

-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도 제2조와 같이 자동차세 면세 대상을 각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항과 제2항의 자구를 일부수정 하였습.

○ '98. 4. 10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'98. 4. 13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이 개정되어 도시과가 도시주택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개정 (안 제2조제2항)

○ '98. 4. 14 산업·건설위원회 회부

□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사일정

1.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

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(안)

□ 회기 : '98. 4. 16 ~ 4. 22 (7일간)

월 일	부 의 안 건	비 고
'98. 4. 16 (木) 11:00	개 회 식 1. 회기결정의 건 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.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	
'98. 4. 17(金) ~ '98. 4. 18(土) (2일간)	휴 회	(상임위원회 활동) - 조례안 심사 - 주요 사업장 확인
'98. 4. 19 (日)	휴 회	공휴일
'98. 4. 20 (月)	휴 회	(상임위원회 활동) - 조례안 심사 - 주요 사업장 확인
'98. 4. 21 (火)	1. 군정질문	

월 일	부 의 안 건	비 고
'98. 4. 22 (水)	1.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.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.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.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.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.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.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보고서 채택의 건 8. 기타 일반안건	